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5. 24 평창군수(환경복지과장)
- 나. 회부일자 : 2001. 6. 21
- 다. 상정일자 : 2001. 6. 21 제8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특
(2001. 6. 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가. 제안이유

- 행락객들에 대한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행위로 인해 청정환경에 날로 훼손되고 오염되어 감에따라 "강원도에 와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1환경시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강원도의 과태료 인상 계획에 따라 평창군 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조항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버리는 행위 : 5만원에서 10만원
-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 폐기물 버리는 자 : 10~20만원에서 20만원
- 발생쓰레기 수거치 아니하는 경우 : 10~20만원에서 30만원
- 차량·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 버리는행위 : 20~50만원에서 50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태영)

가.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그간 운영하여 왔으나

나.제안이유와 같이 행락객들에 의한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행위로 인해 청정환경이 날로 훼손되고 오염되어 감에 따라 과태료를 인상하여 합부로 버리면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 청정 강원을 지키고자 하여 개정하는 것임.

다.입법절차·형식·자구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과태료 인상기준에 일반지역과 특별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 특별관광지역은 특별지역임.

5. 토론포의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끝 .